

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,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

(제8-5조제2항 관련)

구 분	범 위
기본자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본금 - 자본잉여금(재평가적립금제외) - 이익잉여금(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 평가손익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제외) <개정 2012.3.27., 개정 2018.9.3.> 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<신설 2012.3.27.> - <삭제 2012.3.27.> -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(후순위성, 영구성 등)을 가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
보완자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평가적립금 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(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)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<개정 2012.3.27., 개정 2018.9.3.> -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“정상” 및 “요주의”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<개정 2012.3.27.> - 영구후순위채권,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-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-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(관련 세액효과 차감후)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,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<신설 2012.3.27.>
공제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업권 상당액, 이연법인세자산, 주식할인발행차금,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, 자기주식(기본자본에서 공제) <개정 2018.9.3.> -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은행과 상호보유한 주식·부채성자본조달수단·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(자기자본에서 공제) -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(자기자본에서 공제) - 증권금융회사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사항